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7일,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8.23.)

상정,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보윤 의원)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 운영,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횡령, 사기 등 장애인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처음 집계한 889건 대비 33.4%가 증가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5.5%, 43.9% 증가한 4,958건과 2,641건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됨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학대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① 시설 이용 장애인 인 권지킴이단에 소속된 자,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직무지도원 및 근로지원인 등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포함하여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1개 이상 두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별 편차는 다음에서 보듯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임.

①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 인구가 약 58만명인데 비해, 세종특별자치시는 약 1만 2천명으로 지역별 장애인 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대의심 사례 건수도 각각 569건과 62건으로 차이가 있음(참고자료 1: 장애인 수 대비 지역 및 기관별 학대의심 사례 현황).

②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1명의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도 많게는 587회(대전광역시)에서 적게는 157.5회(대구광역시)로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참고자료 2: 지역 및 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현황).

③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은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

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